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662

발의연월일: 2021. 4. 22.

발 의 자:최종윤·김진표·민병덕

백혜련 • 양이원영 • 오영환

이규민・이수진(비)・이인영

인재근 · 임오경 · 조오섭

허 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·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.

그런데 2020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 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 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.

한편,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의 심신상태, 생활환경, 욕구 등을 고려하고,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이 있음. 이에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·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 신설, 제5조제2호).

법률 제 호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기본원칙) ①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,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 하여야 한다.

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.

제5조제2호 본문 중 "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"을 "6세 이상 65세 미만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/u>	제2조의2(기본원칙) ① 활동지원
	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, 생
	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
	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
	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	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
	가족과 함께 지역 사회 안에서
	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
	도록 제공하여야 한다.
제5조(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)	제5조(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)
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	
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	
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	2. 6세 이상 65세 미만인
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	
<u>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</u>	
<u>정하는 연령 이상인</u> 사람. 다	
만,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	
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	
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	
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	
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	

자격을 갖는다.	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